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92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김 경, 강동길, 김성준,
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
김춘곤, 박승진, 박영한,
박칠성, 봉양순, 서준오,
신복자, 유정인, 유정희,
윤종복, 이민옥, 이영실,
이용균, 이원형, 이종태,
임규호, 전병주, 최민규,
한 신, 홍국표 의원(26명)

1. 제안이유

-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실태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관한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예산 등 지원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근거(안 제15조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을 받는 사업주체에게 사업 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예산 등 지원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5조(예산 등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을 받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</u>